

개인형 퇴직연금(IRP)안내

* 2012년 7월 26일 부터 적용되는
전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하위법규)에 의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및 퇴직금)의 주요 내용으로
확정되는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요약



■ 신한은행 IRP의 특징 : 단일 또는 복수계좌 가능

- 단일계좌 : 단일 포트폴리오 운용의 일관성 유지 및 편의성 도모
- 복수계좌 : 퇴직급여와 추가부담금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

■ 가입대상 : 퇴직연금(DB/DC/기업형IRP/기존개인형IRA)

가입자(타사업자 가입자도 당행에 신규 가능)

■ 불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200만원

(가입 한도내에서 여러 계좌로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적립기간 +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 : 제한없음.
- 연금지급기간 : 만 55세 이상 & 적립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연단위

■ 세제 : 201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공식 세법개정안은 2012.8월초 발표 예정)

구분		적용 소득세(현행)		적용 소득세(예상 개정안)	
		일시금 수령시	연금 수령시	일시금 수령시	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법정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운용수익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자기 부담금	근로자부담금중 소득공제분	(해당규정없음)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운용수익	(해당규정없음)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 중도해지 : 제한없음(가입자가 원할 시)

■ 중도인출 : 근퇴법상 중도인출 사유 해당시에 한함

■ 수수료 : 적립금 평가액 평잔×0.5%(연간)

- 운용관리수수료 0.3%, 자산관리수수료 0.2%

- 장기계약유지할인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할인, 4차년도 이후 15%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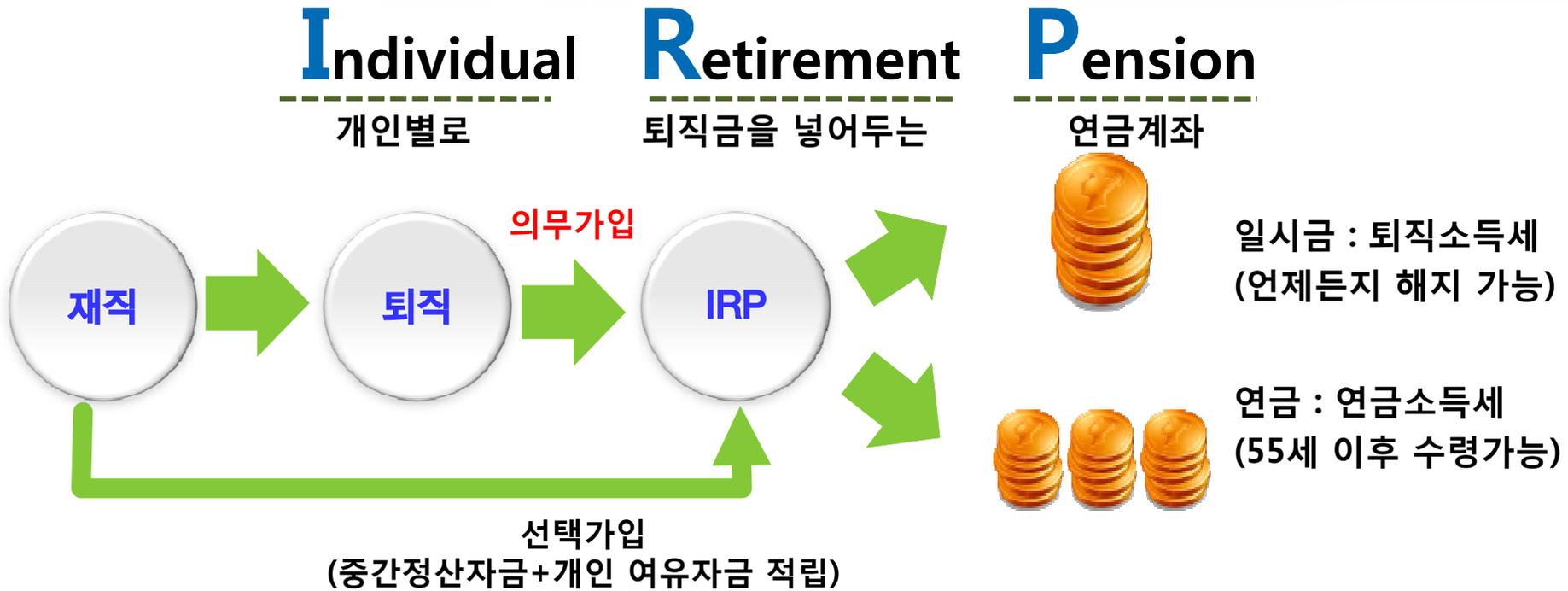
■ 상품운용 : 원리금 보장형상품(정기예금 등)과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등)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운용 (DC/기존IRA와 동일)

■ 소득공제 : 당해년도 적립금의 100%(최고 400만원) (단, 연금지축, DC 추가부담금과 합산 한도)

1.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란?



- IRP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새로운 노후대비 상품입니다.(2012.7.26 이후 적용)
- IRP는 퇴직연금제도의 하나로 새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개인퇴직계좌(IRA)가 진화한 상품입니다.
(기존 IRA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형태임)



- 가입대상 : 중간정산, DB/DC/기업형IRP/기존개인형IRA 가입근로자
- 개인자금 입금한도 : 연간 1,200만원
- 가입시 장점
 - 소득공제 혜택 : 연금저축 합산 연간 400만원
 - 연금수령 선택권 : 55세 이후 연금 선택 가능
 - 수익성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효과, 일반금융상품 대비 수익률 우수

1.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란?



과세이연효과 - 비과세로 운용후 수령시 과세됩니다.



참고) 2012.8 세법개정안에서 아래와 같은 IRP 세제개편이 예상됩니다.

구분		적용 소득세(현행)		적용 소득세(예상 개정안)	
		일시금 수령시	연금 수령시	일시금 수령시	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법정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운용수익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자기 부담금	근로자부담금중 소득공제분 ^{주1)}	(해당규정없음)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운용수익	(해당규정없음)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주1) 자기부담금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님

1.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란?



IRP 가입혜택

- 1) 개인 추가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내^{주1)}
- 2) 연금수령 선택권 -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 원하시면 언제라도 중도해지 가능
- 3) 수익성 - 과세이연에 따른 추가수익 효과 & 다양한 상품을 활용한 자유로운 포트폴리오
- 4) 가입자 우대서비스 - 각종 수수료 면제 및 제휴서비스
- 5) 토탈자산관리 서비스 - S-솔루션 시스템을 통한 은퇴/재무설계등 토탈자산관리서비스 제공

주1) 추가불입금의 소득공제 효과
 (단, 기존 DC형 추가불입금과 IRP 추가불입금의 소득공제효과와 연금저축과 합산한 400만원 한도는 동일)

과세표준(퇴직연금 개인추가부담금 공제전)	불입년도 최대 소득세 절감액
1,200만원 이하	400만원 × 6.6% = 264,000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400만원 × 16.5% = 66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400만원 × 26.4% = 1,056,000원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00만원 × 38.5% = 1,540,000원
3억원 초과	400만원 × 41.8% = 1,672,000원

1.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란?



IRP 수수료 안내

수수료 종류	수수료율	부과기준
운용관리	0.3%	적립금자산(신탁재산) 평가금액 평잔 × 수수료율
자산관리	0.2%	적립금자산(신탁재산) 평가금액 평잔 × 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운용/자산관리계약 1년 미만 중도해지 시 부과 중도해지신청일 전일 적립금자산(신탁재산) 평가금액 × 수수료율
계약이전수수료	운용관리 : 15,000원 자산관리 : 15,000원	운용/자산관리계약 계약이전 시 부과
장기계약유지 할인	2차년도 10% 할인, 3차년도 12% 할인, 4차년도 이후 15% 할인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적용	

2. 상품 비교

상품비교 IRP vs. IRA



구분	새로운 IRP	기존 IRA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DB/DC/기업형IRP/기존개인형IRA) 가입자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중간정산 포함)
가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시 의무 이전^{주1)} (근로자가 미리 IRP계좌 설정시 해당 계좌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시 선택에 의한 임의 이전 (퇴직후 60일 이내 80%이상 납입시)
부담금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시 : 퇴직급여액 + 연간 1,200만원까지 • 임의 가입시 : 연간 1,200만원까지 	퇴직급여액(중간정산 포함)
소득공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 및 DC추가부담금 한도 합산) 	없음
중도해지	중도해지 가능 ^{주2)}	중도해지 가능

주1) IRP의무이전 예외사유(근퇴법 시행령 제9조)

-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시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시
- 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주2) 단, 향후 세제 개편으로 중도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2. 상품 비교



유사 상품별 특징 비교

구분	IRP 추가납입	DC 추가불입	연금저축	
가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DB,DC,기업형IRP,기존개인형IRA 가입자 자영업자(2017년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DC 가입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납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입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당 300만원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0.5% (현행 개인형IRA 수수료율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연 0.8% (최소 0.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에 따라 다름 	
연금 수령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세부터 연금 수령 (의무 납입기간 없음)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납입을 한 경우에만 55세부터 연금 수령 	
중도해지 시 패널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소득세 부과 1년 이내 해지 시 해지수수료 부과 (운용 상품 및 회사에 따라 다양 /15,000원, 0.4~0.5%, 면제 등)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소득세(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2.2% 추가 	
세제	일시금 수령시	<현재 별도 세법 규정없음>	퇴직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소득세(22%)
	연금수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소득세(종합과세) 5년 이상 연금수령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운용상품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예금 및 펀드간 변경이 용이 (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함)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상품의 변경이 제한적임 (계약이전 및 복수 상품 선택) 	